

2020학년도 서면부의의결서

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◦ 주요내용

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4. 용어 오류 수정

본 서면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, 재적 의원 12명 중 12명의 동의로
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확인함

2020년 11월 24일

울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(인)

안건 1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○ 입안사유

(1)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
- 근거: 고등교육법 제23조의5,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(2018. 10. 18 시행)
- 필요성
 - 취업난으로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
 -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 증가

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:

- ①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② 일정한 기간 동안
- ③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

(2)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
- 현재 유급은 학생 본인의 원에 의한 '자진유급' 과 학사처분에 의한 '유급' (의학(예)과의 경우로 평점평균이 1.7이하인 경우 등)으로 나누어 짐
- 학사처분에 의한 유급을 '자진유급' 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'유급' 을 '학사유급' 으로 변경 필요

(3) '글로벌마이스(MICE)'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
(4) 용어 오류 수정

○ 주요 개정 내용

구분	주요 제정 내용(안)	
(1) 학사 학위 취득 유예 제도	신청 대상	-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. 단, 졸업학년초과자로서 휴학 중인 자, 학석사연계과정자는 제외
	학적 분류	-재적생=재학생+휴학생+학사학위취득 유예생 -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‘휴학’, ‘자퇴’ 등 학적변동 불가
	유예 신청횟수 및 기간	- <u>1회, 1년</u>
	수강, 학점 및 등록금 등	- <u>수강 가능</u> . 단,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-등록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(1/6, 1/3, 1/2, 전액) (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) -학점 취소 불가
	유예 비용	-수강에 따른 등록금 이외에 <u>별도의 유예 비용은 없음</u>
	시행시기	- <u>2021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</u>
	기타	-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 시설 등 이용 가능 - ‘졸업유보’ -> ‘졸업학년초과’ (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년, 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)로 용어 변경 -기존 졸업학년초과자(졸업유보자)의 ‘휴학 중 졸업 제도’ 는 2023년 2월까지만 운영

구분	현행	개정(안)						
(2)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용어 정리	자진유급	좌 등						
	<u>유급</u> (의학(예)과)	<u>학사유급</u>						
(3) 글로벌마이스(MICE) 연계전공 신설	<신설>	별표 4 2. 연계전공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전공명</th> <th>주관학부(과) /전공</th> <th>참여전공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글로벌마이스(MICE)</u></td> <td>국제관계학</td> <td>국제관계학, 경제학, 법학, 중국어·중국어학, 역사·문화학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전공명	주관학부(과) /전공	참여전공	<u>글로벌마이스(MICE)</u>	국제관계학	국제관계학, 경제학, 법학, 중국어·중국어학, 역사·문화학
전공명	주관학부(과) /전공	참여전공						
<u>글로벌마이스(MICE)</u>	국제관계학	국제관계학, 경제학, 법학, 중국어·중국어학, 역사·문화학						

※ 학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해 ‘학사운영 규정, 학위수여 규정 등 개정 예정’

「울산대학교학칙(2-1-1)」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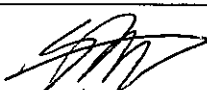
현	행	개	정 (안)
<p>제20조(휴학) 질병, 창업, 병역, 임신·출산·육아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), <u>졸업유보, 가사사정, 유급(의예과 및 의학과에 한함)</u>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을 요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휴학) 질병, 창업, 병역, 임신·출산·육아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), <삭제> 가사사정, <u>학사유급</u>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을 요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</p>		
<p>제21조(휴학기간) ① <생략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통산 휴학기간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. 1.~4. <생략> 5. <u>졸업 유보</u>: 2개 학기. 단, 제1항의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. 6. <u>유급으로</u> 인해 이수학기를 맞추기 위한 <u>휴학(의예과 및 의학과에 한함)</u>: 유급한 학기의 다음 학기 7. <생략></p>	<p>제21조(휴학기간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통산 휴학기간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. 1.~4. <현행과 같음> 5. <삭제> 6. <u>학사유급으로</u> 인해 이수학기를 맞추기 위한 <u>휴학</u>: 유급한 학기의 다음 학기 7. <현행과 같음></p>		
<p>제23조(자진퇴학)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<신설></p>	<p>제23조(자진퇴학)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단, <u>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자진퇴학을 할 수 없다.</u></p>		
<p>제24조(제적) 다음 각 <u>호의 에</u>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. 1. 매학기 <u>소정기간내에</u>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.~7. <생략></p>	<p>제24조(제적) 다음 각 <u>호에</u>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. 1. 매학기 <u>소정기간 내에</u>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. 단, <u>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.</u> 2.~ 7. <현행과 같음></p>		
<p>제37조(학사처분)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는 매학기말 <u>학업성적 사정회 심의를</u> 거쳐 학사 처분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37조(학사처분)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는 매학기말 <u>학업성적 사정을</u> 거쳐 학사 처분하되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	
<p><신 설></p>	<p>제43조의 3(<u>학사학위취득 유예</u>) 제43조의 <u>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으며</u>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	
<p>제45조(학위수여 및 취소)<개정 2015. 3. 1.> ① 본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사정회를 거쳐 별지 서식 제1호의 학위증을 수여하며, 각 전공별 학위 종별은 별표2<개정 2019. 12. 1.>와 같다. ② 삭 제<2000. 3. 1.> ③ 삭 제<1989. 3. 1.> ④ <u>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자가 졸업요건을</u></p>	<p>제45조(학위수여 및 취소)<개정 2015. 3. 1.>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<u>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</u></p>		

현	행	개	정 (안)																
<p>갖추고 소정의 기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총장의 승인 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⑤ <생 략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	<p>수여할 수 없다.</p> <p>⑤ <현행과 같음></p> <p>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하여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위증을 수여한다.</p>				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졸업유보자의 휴학 중 졸업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제45조제4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.</p> <p>3. (졸업유보 시 추가 휴학기간 부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2022년 8월까지는 제20조 및 제21조제2항제5호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. 단, 2022년 8월에 최초 졸업유보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을 1개 학기를 부여한다.</p>																	
<p>별표 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공 별 학 위 종 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학 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전 공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 략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생 략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경영·복지학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경영·복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학 위	전 공	<생 략>	<생 략>	공공경영·복지학사	공공경영·복지	<신 설>	<신 설>	<p>별표 2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 공 별 학 위 종 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학 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전 공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같음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현행과 같음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경영·복지학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공경영·복지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글로벌마이스(MICE)학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글로벌마이스(MICE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학 위	전 공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공공경영·복지학사	공공경영·복지	글로벌마이스(MICE)학사	글로벌마이스(MICE)
학 위	전 공																		
<생 략>	<생 략>																		
공공경영·복지학사	공공경영·복지																		
<신 설>	<신 설>																		
학 위	전 공																		
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																	
공공경영·복지학사	공공경영·복지																		
글로벌마이스(MICE)학사	글로벌마이스(MICE)																		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위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위원회 의장
주 제					
<p>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</p> <p>◦ 주요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 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 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 4. 용어 오류 수정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</p>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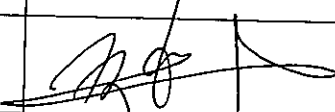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(교원/직원/조교/ 학생/총동문회 중 택1)	신수진	✓		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주 제					
<p>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요내용 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 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 3. '글로벌마이스(MICE)'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 4. 용어 오류 수정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</p>					

* 본인은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(교원/직원/조교/ 학생/총동문회 중 택1)	김 장 한	○		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주 제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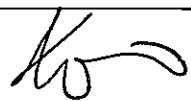
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◦ 주요내용

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4. 용어 오류 수정

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
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(교원/직원/조교/학생/총동문회 중 택1)	구교남	○		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

주 제

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◦ 주요내용

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4. 용어 오류 수정

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
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(교원/직원/조교/ 학생/총동문회 중 택1)	정빈자	0		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

주	제
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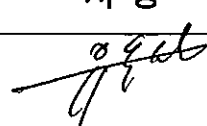
■ 안전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◦ 주요내용

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4. 용어 오류 수정

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
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교원	유용상	○		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주 제					
<p>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</p> <p>◦ 주요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 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 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 4. 용어 오류 수정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</p>					
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직원	박종호	○		박종호

대학평의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 신	대학평의회 의원	일 자	2020. 11. 16.(월)	발 신	대학평의회 의장
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주 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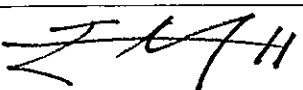
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

◦ 주요내용

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4. 용어 오류 수정

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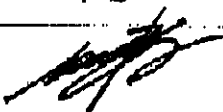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 속	성 명	동의 여부		서 명
		가	부	
(교원/직원/조교/ 학생/총동문회 중 택1) ✓	김무호	✓		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 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 자	2020. 11. 16.(월)	발 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주 계					
<p>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</p> <p>◦ 주요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 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은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 3. ‘글로벌미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 4. 용어 오류 수정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</p>					

* 본안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 속	성 명	동의 여부		서 명
		가	부	
출정순리	강병철	○		

대학평의위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위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월)	발신	대학평의위원회 의장
주 제					
<p>■ 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</p> <p>◦ 주요내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 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 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 4. 용어 오류 수정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</p>					

* 본인은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조교	최정원	○		최정원

대학평의원회 서면부의 의결서

수신	대학평의원회 의원	일자	2020. 11. 16.(일)	발신	대학평의원회 의장
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

주 제

■ **안건: 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**

◦ **주요내용**

1.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시행
2. 유급 종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유급관련 용어 정리
3. ‘글로벌마이스(MICE)’ 연계전공의 신설에 따른 별표4 개정
4. 용어 오류 수정

붙임: 주요내용 설명자료 1부.

* 본인은 ‘「울산대학교 학칙」 일부개정(안)’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시합니다.

소속	성명	동의 여부		서명
		가	부	
총동문회	강문기	0		